

의안번호	2218414
의 퇴 인	정혜경 의원
회 답 일	2026. 7. 28.
추계번호	26A2240

한국발전공사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자본금)	○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함	의무규정
2	안 제13조(자금의 조달)	○ 공사는 그 운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함 - 1. 자본금과 적립금 -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3. 제14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6. 자산운용수익금 - 7.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 8. 그 밖의 수익금	의무규정
3	안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 정부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음(제2항) - 1. 운영비의 일부 - 2. 발전사업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자본금)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3조(자금의 조달)	
3	안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2. 상세 사유

가. 자본금(안 제5조)

- 제정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하여 정부의 출자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발전공사는 현행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하 “5개 발전공기업”)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함(안 부칙 제5조제1항1))
 - 한국발전공사가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정부가 이를 한국발전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봄(안 부칙 제8조)
 - 이때 한국발전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함(안 부칙 제5조제3항)
- 제정안에 따라 한국발전공사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5개 발전공기업의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되며, 실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출자 규모와 출자 시기 등은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결산 기준 5개 발전공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 규모는 다음과 같음

1) 안 부칙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5개 발전공기업의 명의를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된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표 1] 5개 발전공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고유사업, 2025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한국남동발전	13,489,757	7,236,626	6,253,131
한국남부발전	13,084,738	7,008,974	6,075,764
한국동서발전	12,352,788	5,605,539	6,747,249
한국서부발전	13,222,760	7,968,392	5,254,368
한국중부발전	14,848,947	9,422,147	5,426,80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나. 자금의 조달(안 제13조)·보조금과 출연금(안 제15조)

- 안 제13조에 따라 한국발전공사가 그 운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차입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보조금과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달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한국발전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발전사업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5조)
- 한국발전공사의 사업 범위가 현행 발전공기업보다 넓고,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5개 발전공기업의 사업과 비교(예시: 한국남동발전)할 때 제정안의 한국발전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59호)에 의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표 2] 5개 발전공기업(예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발전공사의 사업 범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정관」 제2조)	한국발전공사 (안 제12조)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전력자원의 개발 -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 3. 상기 1호부터 2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 4. 상기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 5. 상기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 6. 상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과 제2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력자원의 개발 - 2. 발전(發電)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 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에 의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 -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자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정관」 및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고로, 2026년 예산 기준 5개 발전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없으며, 사업비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3] 5개 발전공기업의 수입, 지출 및 사업비 현황(고유사업, 2026년 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정부직접지원		사업비
한국남동발전	9,249,060	—	9,249,060	6,238,644
한국남부발전	8,426,684	—	8,426,684	5,327,465
한국동서발전	7,358,664	—	7,358,664	4,650,848
한국서부발전	8,176,151	—	8,176,151	5,218,038
한국중부발전	7,830,428	—	7,830,428	4,517,58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